

심 사 보 고 서

1.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정(안)

도 시 건 설 위 원 회

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(안) 심사 보고서

도시건설 위원장 박 영 환 입니다

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에서 당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(안)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지금까지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 관리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운영 되어 왔습니다 만, 소하천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 4873호로 제정 공포 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7월 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, 소하천의 지정및 관리청이 시장. 군수.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관장토록 되어

소하천의 점용료등과 부당이득 및 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, 감면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

본 조례가 제정 되어 시행되면 도로부터 30 %의 징수교부금만 받던 것이 전체가 시 수입으로 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, 현행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도 조례가 규정하는 것 보다 점용자의 부담은 경감 됩니다.

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민에게 국한되고, 또 이제까지의 도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사항 일지라도 부담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.

존경하는 의장님!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!

보고 드린 조례제정(안)은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로 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입법예고를 하였고,

상부기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도 하며, 모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,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